

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2376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1년 11월 23일

발의자 : 정병용 의원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시행 2022. 1. 13.)으로 우리시의회 자치법규
중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개정 법률에 맞게 일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 변경 및 자구 정정 등
- 나. 「하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」의 개정
-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의2~3)

3. 개정규칙안 : 덧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덧붙임

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안

제1조(「하남시의회 사무전결 규칙」의 개정) 하남시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92조”를 “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04조”로 한다.

제2조(「하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」의 개정) 하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 제57조”를 “지방자치법 제65조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 단서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83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95조”로 한다.

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.

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.

④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.

1.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2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

대리인이었던 경우

3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·진술·자문·연구·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
4.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
제5조의3(의견수렴)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·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,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.

제3조(「하남시의회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」의 개정)

하남시의회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과 하남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제6조제3항”을 “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”을 “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”으로 한다.

제4조(「하남시의회 청원심사 규칙」의 개정)

하남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60조”를 “제61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1. 하남시의회 사무전결 규칙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<u>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92조</u>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,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사무의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<u>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04조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2. 하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<u>지방자치법 제57조</u>에 따라 하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(이하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<u>지방자치법 제65조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4조(심사 요구) ① (생략)</p>	<p>제4조(심사 요구) ① (현행과 같음)</p>

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.

1.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
2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3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·진술·자문·연구·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
4.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

제5조의3(의견수렴)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·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,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.

<신 설>

